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허1642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금강씨에스

피 고 아사아블로이코리아 주식회사(합병 전 : 삼화정밀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2. 26. 2015당542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 1) 발명의 명칭 :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 2) 출원일 /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4. 19./ 2008. 4. 11./ 제8231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도어에 고정되며 정방향 회동력을 갖는 회동축이 마련된 본체와; 상기 본체에 마련된 회동축에 고정되는 선회암; 및 문틀에 고정되어 절첩암을 통해 상기 선회암과 링크구조를 형성하는 고정 브라켓을 포함하여 구성된 도어 클로저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상기 회동축에는, 원판 몸체의 외경면에 가압홈이 요입되게 형성된 작동기어가 축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작동기어의 일편에는 상기 작동기어의 외경면을 가압하는 탄지부재가 배설되어(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회동축이 정방향으로 회전되어 도어가 폐쇄되는 과정 중에 탄지부재와 작동기어의 가압홈이 대향하여위치되면, 상기 작동기어는 탄지부재의 탄발력을 인가받아 회전축을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시켜, 도어의 안정적인 폐쇄상태를 확보하도록 구성(이하 '구성요소 3')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지부재는 본체에 일단이 지지된 토션 스프 링의 타단이 롤러를 마련하여, 작동기어의 외경면을 탄지하도록 구성된 토션 스프링형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는 조절볼트가 체결된 고정편이 돌출하여 형성되며, 상기 토션 스프링의 일단은 고정편에 체결된 조절볼트에 지지되어, 조절볼트의 조임량에 따라 토션 스프링의 탄발력이 조절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지부재는 본체에 일단이 지지된 코일 스프링의 타단이 가압볼을 마련하여, 작동기어의 외경면을 탄지하도록 구성된 코일 스프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본체에는 조절볼트가 후미에 체결된 고정부쉬가 설치되며, 상기 코일 스프링의 일단은 상기 조절볼트에 지지되어서, 조절볼트의 조임량에 따라 코일 스프링의 탄발력이 조절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된 폐쇄 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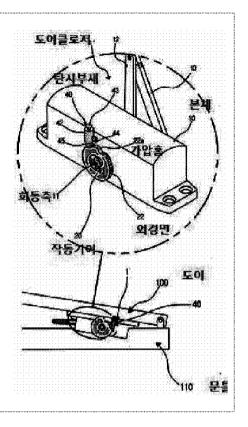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도어의 안정된 폐쇄가 가능한 도어 클로저에 관한 것이고, 더욱 상세하게는 회동축의 정방향 회동력이 약화된 시점, 즉 도어가 문틀에 진입 하여 닫히는 시점에 회동축에 외력을 제공하여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도어의 안정된 폐쇄가 가능한 도어 클로저에 관한 것이다.

도어 클로저는 일반적으로 도어가 개방되어 회동축이 역방향으로 선회한 상태에서는 강한 폐쇄력(정방향 회동력)을 가지며, 회동축이 정방향으로 선회하여 도어가점차 폐쇄되면 폐쇄력(정방향 회동력)은 점차 약화 내지 소실된다. 따라서 도어 클로저의 폐쇄력에 의해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아니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접 도어를 밀어서 도어를 폐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체에 가압홈이 형성된 작동기어와 탄지부재를 각각 배설하여, 회동축 [도 5b] 의 폐쇄력(정방향 회전력)이 약화된 시점에 탄지 부재의 탄발력이 회동축에 제공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회동축(11)¹⁾의 자체 회전력에 의해 도어(100)가 서서히 더 닫혀져 도어(100)가 문틀(110)에 진입하는 순간, 즉 회동축(11) 자체의 정방향 회전력이 약화된 시점에는 탄지부재(30, 40)와 작동기어(20)의 가압홈(22a)은 대향되게 위치한다.

따라서 압축된 탄지부재(30, 40)는 작동기어 (20)의 가압홈(22a)을 견착하여 탄지하게 되고, 작동기어(20)를 통해 탄지부재의 탄발력을 인가 받은 회동축(11)은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하여 도어(100)의 안정적인 폐쇄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1호증의 1, 2)

1987. 4. 21. 등록되어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4,658,468호에 게재된 '도어 체크 (DOOR CHECK)'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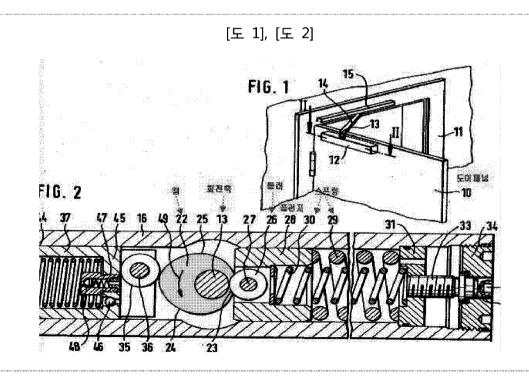
도어패널(10)의 상단에 고정되는 상자 모양의 유닛(12)에는 수직의 축(13)이 구비되고, 축(13)은 도어패널(10)이 회전할 때 유닛(12) 내에서 회전하게 된다(칼럼 4의 40행~49행). 축의 중간 부분에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하트 캠과 같은 디스크 모양의 캠(22)이 결합되거나 일체로 형성된다. 원주 방향으로 확장되는 캠(22)의 측면은, 제1 롤러(26)의 궤도가 되는 제1면(23, 24)과 제2 롤러(35)의 궤도가 되는 제1면(25)으로 구성된다. 제1면의 제1 부분(23)은 오목한 형상으로 형성되고, 도어패널(10)이 폐쇄되는 캠(22)의 회전각도로 복귀할 때 제1 롤러(26)의 일부가 위치하는

¹⁾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소켓이 된다(칼럼 5의 6~19행).

사람이 도어패널(10)을 열면 암(14)은 축(13)을 [도 2]에서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이러한 회전운동의 초기 단계에 제1 롤러(26)가 제1면(23, 24)의 오목한 제1 부분(23)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므로, 도어패널의 회전각은 작은 데 비하여, 플런저(28)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스프링들(29, 30)에 상당한 반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어패널을 열기 시작할 때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게 된다(컬럼 6의 66행 ~ 칼럼 7의 10행). 도어패널(10)을 놔주면 스프링들(29, 30)이 복귀하면서 플런저(28)를 밀게 되므로, 캠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도 2]에 도시된 위치로 복귀한다(칼럼 7의 48~54행).

제1 롤러(26)의 접근각과 플런저(28)의 축방향 변위의 관계는, 도어패널이 열리는 회전운동의 초기 단계에 도어패널(10)에 현저히 큰 초기 저항력을 줄 수 있고 {즉, 스프링들(29, 30)은 도어패널(10)이 폐쇄 위치로 향하는 마지막 단계에 현저히 큰 힘을 가한다.}, 도어패널(10)이 약간의 회전(예를 들면, 약 2° 정도 회전)을 한 후에는 도어패널(10)의 회전운동에 대한 저항력이 갑자기 감소하도록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칼럼 8의 46~65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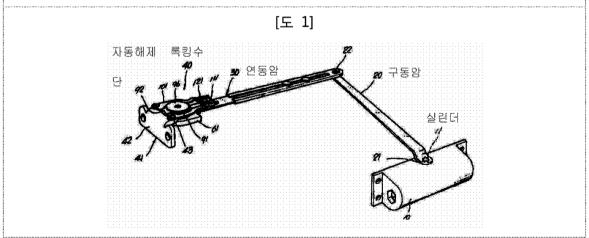
2) 선행발명 22)(을2호증)

1995. 7. 14. 공고되어 실용신안공보 실1995호-5599호에 실린 '방화 도어 클로 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 종래의 도어 클로저는 스프링과 오일의 압력에 의하여 상시 닫히는 방향으로 회 동복원력이 설치된 구동축을 가지며 문틀 또는 문 상단에 고정 설치되는 실린더와, 이 구동축에 일단이 고정 연결되는 구동암과, 그 구동암의 타단에 일단이 연결되는 연동암 및 이 연동암의 타단이 힌지 연결되며 문틀 또는 문의 상단에 고정 설치되 는 고정구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도어 클로저는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거나 실린더의 구동축을 록킹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 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자가 받침목을 치우거나 구동축의 록킹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화재의 확산방지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 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는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서 화재의 확산방지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자동해제 록킹수단(40)을 실린더(10)와, 구동암(20) 및 연동암(30)에 연결시키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5. 11.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

²⁾ 선행발명 2는 실제로는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이나,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에다가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42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2. 2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2~5 역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 1) 청구항 1은 "방화 문"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도어 클로저' 그 자체가 아니라 '도어 클로저의 패쇄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문"에 적용되는 통상의 도어 클로저에 관한 선행발명 1과 대비할 때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중 암을 갖는 도어 클로저와 폐쇄력 보조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방화 문이 닫히는 시점에 강한 폐쇄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선행발명들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달성할 수 없는 현저한 작용효과이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제부는 '이중 암'을 갖는 도어 클로저에 관한 것으로, 출원 당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이거나 선행발명 2에 제시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단일 암'을 '이중 암'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러한 변경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지 청구항 2~5의 각 추가 한정 구성 역시 모두 선행 발명 1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 3.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 요소	청구항 1(갑2호증)	선행발명 1(을1호증의 1)
전제부	도어에 고정되며 정방향 회동 력을 갖는 회동축이 마련된 본 체와; 본체에 마련된 회동축에 고정되는 선회암; 및 문틀에 고정되어 절첩암을 통해 선회 암과 링크구조를 형성하는 고 정 브라켓을 포함하여 구성된 도어 클로저	- [도 1]은 프레임(11)과 패널(10)을 포함하는 도어의 상부 부분을 도시한다. 도어체크는 세장형 가이드(15)와 수평 아암(14)을 포함하고, 이 세장형 가이드(15)는 세장형 슬롯을 갖는 중공 레일의 형태이고 패널(10)을 위한 피봇 축에 근접하여프레임(11)의 상부 수평부재 상에 설치된다. 수평 아암(14)은 그 일 단부가 슬롯을 통해 중공 레일(15)의 내부로 연장되고 중공 레일의 내부에서 패널의 폐쇄위치와 개방 위치 사이에서 전후로 움직인다. 세장형 박스유닛(12)은 패널(10)의

구성 요소	청구항 1(갑2호증)	선행발명 1(을1호증의 1)
		상부 부분에 장착되고 수직 샤프트(13)를 포함하며, 이 수직 샤프트의 상부 단부 부분은 아암(14)의 다른 단부 부분에 회전 불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터브(17)를 구성한다. 따라서 수직 샤프트(13)는 도어의 프레임(11)에 관하여 패널이 피봇하게 될 때 세장형 박스유닛(12)의 세장형 하우징 또는 케이스(16) 내에서 회전하게 된다(컬럼 4의 16~49행 참조)
1	회동축에는 원판 몸체의 외경 면에 가압홈이 요입되게 형성 된 작동기어가 축 설치	- 원주방향으로 확장되는 캠(22)의 측면은 제1 롤러(26)의 궤도가 되는 제1면(23, 2 4)과 제2 롤러(35)의 궤도가 되는 제1면 (25)으로 구성된다. 제1면의 제1 부분(2 3)은 오목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도어패 널(10)이 폐쇄되는 캠(22)의 회전각도로 복귀할 때 제1 롤러(26)의 일부가 위치하는 소켓이 된다(칼럼 5의 6~19행)
2	작동기어의 일편에는 작동기어 의 외경면을 가압하는 탄지부 재가 배설	- 제1 롤러(26)와 그 축 부재(27)로 구성되는 캠 종동부는 플런저(28)에 구비된다. 캠 종동부, 플런저와 나선형 스프링들(2 9, 30)로 구성된 토크 전달기구는 도어 패널(10)을 폐쇄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 하여 제1 롤러(26)를 캠(22)의 제1면(23, 24)으로 밀어낸다(칼럼 5의 32~40행).
3	회동축이 정방향으로 회전되어 도어가 폐쇄되는 과정 중에 탄 지부재와 작동기어의 가압홈이	- 제1 롤러(26)의 접근각과 플런저(28)의 축방향 변위의 관계는, 도어패널이 열리 는 회전운동의 초기 단계에 도어패널(1

구성 요소	청구항 1(갑2호증)	선행발명 1(을1호증의 1)
	대향하여 위치되면, 작동기어는 탄지부재의 탄발력을 인가받아 회전축을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시켜, 도어의 안정적인 폐쇄상태를 확보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의 안정된 폐쇄상태를 확보하는 도어 클로저	0)에 현저히 큰 초기 저항력을 줄 수 있고{즉, 스프링들(29, 30)은 도어패널(1 0)이 폐쇄 위치로 항하는 마지막 단계에 현저히 큰 힘을 가한다}, 도어패널(1 0)이 약간의 회전(예를 들면, 약 2° 정도 회전)을 한 후에는 도어패널(10)의회전운동에 대한 저항력이 갑자기 감소하도록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칼럼 8의 46~65행).
주요 도면	[도 5b] SOINT NO SOI	[E 1] [E 2] [F 2] [F 3] [F 3] [F 4] [F 3] [F 4] [F 4] [F 4] [F 5] [F 5] [F 6] [F 7] [F

가) 전제부 부분

청구항 1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도어에 고정되어 도어가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어 클로저(도어 체크)3)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청구항 1의 전제부는 도어 클로저의 본체와 고정 브라켓이 선회암 및 절첩암의링크 구조(이하 '이중 암')에 의하여 연결되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도어 체크의 박스형 유닛(12)과 중공 레일(15)이 수직 샤프트(13)(이하 '단일 암')에 의하여 연결된다. 즉, 청구항 1의 전제부 구성요소는 '이중 암'을 갖는 도어 클로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단일 암'을 갖는 도어 클로저로서 그 연결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있는 것이다.

나) 구성요소 1~3 부분4)

- ①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원판 몸체의 외경면(측면의 제1면)에 요입되게 가압홈(오목한 형상의 제1 부분)이 형성된 작동기어(캠)라는 점에서 그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다.
- ②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작동기어(캠)의 외경면(측면의 제1면)을 가압하는 탄지부재(스프링)가 그 일편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 ③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어(도어패널)가 폐쇄되는 과정에 탄지부재(스프링)가 가압홈(오목한 형상의 제1 부분)에 대향하면(삽입될 때), 탄지부재(스프링)의 탄발력(반력)이 인가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³⁾ 괄호 안에 함께 적은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이다. 이 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3과 각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구성요소 3은 '작동기어가 탄지부재의 탄발력을 인가받아 회전축을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시켜, 도어의 안정적인 폐쇄상태를 확보하도록 구성된다.'고하여 작동기어 및 탄지부재를 기능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도 '스프링(29, 30)은 도어패널(10)이 폐쇄 위치로 향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현저히 큰 힘을 가한다.'고되어 있어, 도어패널이 폐쇄되는 마지막 단계에 스프링의 반력이 캠(22)에 작용하여 도어를 폐쇄하므로, 이들은 그 기능 및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연결구조의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1) 즉, 청구항 1의 전제부가 채택하고 있는 도어 클로저 본체와 고정 브라켓의 '이중 암' 연결구조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5), 선행발명 2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 2) 도어 클로저 관련 장치산업 분야에서는 향상된 폐쇄력을 갖는 도어 클로저의 개발이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에 해당하고, '이중 암' 연결구조가 '단일 암' 연결구조에 비하여 폐쇄력 확보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상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단일 암' 연결구조를 '이중 암' 연결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기술적 동기도 충분하다.
- 3) '단일 암'이나 '이중 암' 모두 '회전축'을 매개로 도어 클로저에 연결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선행발명 2도 '이중 암' 연결구조를 채택하는 등 '단일 암'을 '이중 암'으로

⁵⁾ 원고 역시 청구항 1의 전제부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구조 변경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폐쇄력 향상의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선행발명 1은 '일반 문'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도어 클로저'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연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 문'의 폐쇄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도어 클로저의 폐쇄력 보완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화 문에서 차압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폐쇄 력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은 '작동기어는 탄지부재의 탄발력 을 인가받아 회전축을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반 문에 관한 것으로서 별도로 보조적인 폐쇄력이 필요하지 않은 선행발명 1에 비하여 그 목적 및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선행발명 2나 주지관용기술을 추가한다고 해서 쉽게 극복될 수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어디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방화 문'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

다.

- ② 일반 문에 사용되는 도어 클로저의 경우에도 구조적으로나 주변 이용환경에 따라서는 보조적인 폐쇄력 제공수단에 의하여 충분한 폐쇄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에도 이와 관련하여 '도어 클로저의 폐쇄력에 의해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아니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접 도어를 밀어서 도어를 폐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식별번호 〈24〉).'는 기재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성요소 3에서 '작동기어는 탄지부재의 탄발력을 인가받아 회전축을 정방향으로 신속히 회전시킨다.'는 표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방화 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르면 '도어 클로저의 폐쇄력 보완장치'가 아니라 '도어 클로저'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선행발명 1 역시 캠으로 작동하는 '도어 클로저'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3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을 구비함으로써 도어 클로저의 폐쇄력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도어 클로저에 보조 폐쇄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선행발명 1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과 그기술분야 및 목적에서 특별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2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될 수 있으며, 그 결합으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선행발명들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을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2~5 역시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각 추 가 한정 사항만으로는 새롭게 진보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 명은 그 전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 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이호산

판사 김기수